제주시 공고 제2024-3907호

2025년 청년농업인(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

2025년 청년농업인(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에 따라 신청자 모집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8일

제 주 시 장

1. 지원자격 및 요건

1) 다음 각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해야 신청 가능

가.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25년 사업 기준 : 1985.1.1 ~ 2007.12.31. 출생자)

(예외)

ㅇ 한국농수산대학교, 스마트팜 보육센터 등 장기교육 과정 수료자(당해연도 수료예정자 포함)

- 해당 교육 선발 이전에는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한 연령이었으나 교육 수료 후 만 40세 이상이 된 경우, 교육 수료 기준 차년도까지 사업 신청 가능

나. 영농경력 : 독립경영예정자 및 독립경영 3년 이하

ㅇ 독립경영은 신청자가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임차 등 포함)을 마련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후, 직접 영농에 종사(주품목)하는 경우에 인정

ㅇ 임차 : 돈을 주고 타인 것을 빌려 쓰는 행위이며, ①배우자, ②본인의 직계존속 또는 ③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지·시설을 임차하거나, ④타인과 공유지분(지분비율 무관) 형태로 농지·시설을 소유하는 것은 독립 영농기반 마련으로 인정 불가

ㅇ 주품목 : 전체 영농규모(영농계획서 상) 중 비율(소득 및 재배면적 등)이 가장 큰 품목

ㅇ 세대당 1명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배우자가 영농정착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이미 받은 경우 신청 불가

ㅇ 독립경영 기간은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

○ **`25년 사업 신청이 가능한 자 : `22.1.1. 이후 경영주 등록자**

- 독립경영 1년차(2024.1.1. 이후 등록자 ~ 2025년 등록 예정자), 2년차(2023.1.1. ~ 2023.12.31. 등록자), 3년차(2022.1.1. ~ 2022.12.31. 등록자)

  * 독립경영 1년차는 2024.1.1. ~ 2025.3.31.이며, 독립경영 등록 예정자는 2025.4.1. ~ 농업경영체 경영주 등록 기간을 의미

- 단, 농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병역, 학업, 질병, 임신(10개월) 및 출산(최대 6개월 이내) 등으로 농지 처분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그 기간만큼 독립경영 기간에서 차감하여 연차를 결정

  * (예시1) 2021.1.1. 경영주 등록 → 2021.3.10.~2022.12.9(21개월) 군복무 → 2022.12.10. ~ 2023.12.27. 영농(독립경영) : 실제 영농기간은 14개월이므로 독립경영 2년차 적용

  * (예시2) 2022.1.1. 경영주 등록 → 2023.1.10. 출산 → 2023.12.27. 사업 신청 : 총 영농기간은 24개월이나, 임신기간(10개월) 및 출산(6개월)에 해당하는 총 16개월을 차감하여 실제 영농기간은 8개월이므로 독립경영 1년차 적용

- 이에 따라, 2021.12.31. 이전 경영주 등록자도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사유가 있다면 그 기간만큼을 독립경영 기간에서 차감하여 실제 독립경영 기간이 36개월 이하라면 사업 신청 가능

다.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예외)

○ 병무청으로부터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로 결정을 통보받은 자는 신청 가능

- 단, 산업기능요원 복무 기간은 의무영농 기간 산정 시 제외
- 복무자의 군사 훈련 기간에는 영농정착지원금 지급을 일시 정지하고 영농 수행 시 지급 재개

○ 사업 접수 기간에 군 복무 중이라도 면접 심사일자가 전역일자 이후라면 사업 신청 가능

- 단, 대상자는 사업 신청 시 전역일이 당해연도 사업 면접심사 이전임을 증빙하고, 전역 후 병역필 증명서를 지체없이 지자체에 제출

라. 거주지 :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광역시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독립경영 예정자는 영농기반 마련 예정 시·군·광역시에 신청 가능

* 단, 영농기반 마련 후 영농정착지원금 신청일(별지 3호 서식) 전 날짜까지 해당 시·군·광역시로 주소 이전을 완료(영농기반 마련 이전 사업대상자도 포함)

** 이 경우, 이전하려는 시·군·광역시의 국비·지방비 확보 등 예산 여건에 따라 정착지원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을 유의

2) 1)의 요건을 갖춰도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면 사업 신청 불가

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예외)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더라도 신청 가능**

- ㅇ 해당 지자체의 사업 공고문에 따른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 발표 이후 해당 사업체를 폐업할 경우(기한: 농업경영체 등록 전까지)는 신청 가능
- ㅇ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자가 그 농축산물을 판매, 가공 또는 그 영농기반 및 농축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 단, 가공·체험사업인 경우에 한하여 자가생산 외 농축산물도 사용 가능
- ㅇ 농가 부업 소득활동* 및 생산설비를 활용한 농업 서비스(드론 활용 농약살포 등)를 위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 반드시, 영농에 종사하면서 「소득세법」 제12조에 해당하는 농가부업소득 활동인 경우에만 가능
- ㅇ 본인 명의로 보유 중인 주택, 시설의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축사, 콘크리트·판넬 형태의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가공시설에 한하며(부속시설 제외), 해당 시·군의 사전승인과 건축법상 허가를 거친 경우에만 적용
- ㅇ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을 공동으로 설립한 경우, 공동대표가 각각 신청 가능
  * 이 경우 공동대표의 1인의 지분율은 원칙적으로 20% 이상
  * 다만,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선발을 위한 평가위원회 평가 시, 영농계획 이행을 위해 5인 이상의 공동대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예외적으로 20% 미만도 허용

나.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예외)

- ㅇ 해당 지자체의 사업 공고문에 따른 사업 대상자 최종 선정 발표 이후, 해당 업체에서 퇴직할 경우(기한: 농업경영체 등록 전까지) 신청 가능
- ㅇ 4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3개 이하로 가입한 경우, 월 10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 신청 가능
  * (단, 농업인으로 인정되는 대표이사에 한정) 급여 형태로 보수를 받는 농업법인 대표이사는 직장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신청 가능
  * 4대 보험 중 총 4개를 모두 가입한 경우는 불가능

다.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

- ㅇ 기준 : **본인세대*의 건강보험료 산정액(본인부담액 또는 부과액)**
  * 대상자 단독세대 또는 부모가 본인세대의 피부양자인 경우에만 해당
- ㅇ ‘24년 12월에 대상자 세대에 부과된 건강보험료가 **다음 기준보다 초과할 경우, 사업 신청 불가**

< '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위소득 140%(가구원 4인 기준) >

구분	직장가입자 본인부담액	지역가입자 부과액	혼합*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본인세대	289,638원	254,448원	296,718원

* 혼합 : 부부 중 1인은 직장가입자, 1인은 지역가입자인 경우 직장가입자의 본인부담액과 지역가입자의 부과액을 합산한 금액의 기준

** 5인 이상 가구 : 가구원 수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 중위소득 140%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판단

*** 본인 부담 건보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의 ' 나의 건강보험료 확인하기 ' 등을 통해 확인 가능

ㅇ 다만, 본인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해당 기준 적용에서 제외

* 부양세대의 건강보험료 고지서 및 건강보험증 제출을 통해 피부양자 자격 증빙

라.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예외)

ㅇ 사업연도 졸업예정자,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는 수준인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주간 과정에 있는 자는 사업 신청 가능

ㅇ 야간 과정 및 방송통신 대학 등 온라인 강의가 주된 과정인 학교의 재학생과 휴학생은 사업 신청 가능

마.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영농정착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바.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을 하는 자

2. 지원내용

○ 1년차(월 110만원), 2년차(월 100천원), 3년차(월 90만원) 영농정착금 지원

구분	지원 1년차 (2025.4 ~ 2026.3)	지원 2년차 (2026.4 ~ 2027.3)	지원 3년차 (2027.4 ~ 2028.3)	합계
독립경영 1년차	110만원(12개월)	100(12)	90(12)	3,600(36)
독립경영 2년차	100만원(12개월)	90(12)	-	2,280(24)
독립경영 3년차	90만원(12개월)	-	-	1,080(12)

* 단, 지급액 및 기간은 해당연도 예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지원금 지급에 따른 의무사항 발생

○ 융자지원 : 5억원(연리 1.5%), 5년 거치 2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 의무사항 및 위반 시 조치사항 >

<table>
<tr><th colspan="2">의무사항</th><th>준수 사항</th><th colspan="2">위반 시 조치사항(제재)</th></tr>
<tr><td rowspan="4">의무
교육
이수</td><td>필수
과정
(28시간)</td><td>• 농업정책, 농업마인드, 농업경영</td><td colspan="2">• 해당 강좌 미이수 시 지원금 2개월 지급 기간차감</td></tr>
<tr><td rowspan="3">선택
과정
(72시간)</td><td rowspan="3">• 생산기술, 경영심화 등 과목은 자율 선택</td><td>• 30%미만 이행</td><td>• 지원금 2개월 지급 기간차감</td></tr>
<tr><td>• 30~80% 이행</td><td>• 지원금 1개월 지급 기간차감</td></tr>
<tr><td>• 80%이상 이행</td><td>• 주의조치
* 2회이상 주의시 3개월 지급 기간차감</td></tr>
<tr><td colspan="2">재해보험,
의무자조금
가입</td><td>• 재해보험 상품이 개발된 품목과 의무자조금 품목 적용</td><td colspan="2">• 미가입시 지원금 1개월 지급 기간차감</td></tr>
<tr><td colspan="2">경영장부 기록</td><td>• 농정원 개발 경영장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작성</td><td colspan="2">• 미기록 시 지원금 지급 일시정지
* 일시정지 3회 이상시 지급 기간차감 및 사업대상자 자격 박탈</td></tr>
<tr><td colspan="2">영농계획 이행</td><td>• 사전 승인 없이 임의적인 영농계획 변경(영농유형, 규모 축소 등) 금지</td><td colspan="2">• 임의 변경 시 지원금 지급 기간차감 및 사업대상자 자격 박탈
* 단, 개선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지자체 판단 유예기간 부여 가능(최대 3개월, 지급 기간차감)</td></tr>
<tr><td colspan="2">전업적 독립
영농유지</td><td>• 상근 고용, 농업과 무관한 사업체 경영 금지</td><td colspan="2">• 위반 시점부터 지원금 환수(월할) 및 사업대상자 자격 박탈</td></tr>
<tr><td rowspan="3">성실
신고</td><td>선발시
신청서류</td><td>• 영농계획서, 의료보험 부과액 등</td><td colspan="2">•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및 사업대상자 자격 박탈</td></tr>
<tr><td>이행
점검</td><td>• 영농이행실적 보고, 경영장부, 재해보험가입 증명서 등</td><td colspan="2">• 허위 작성 시점부터 지원금 환수(월할) 및 사업대상자 자격 박탈
• 미제출시 지원금 일시정지</td></tr>
<tr><td>농업
경영체
변경
신고</td><td>•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변경 시,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변경 신고</td><td colspan="2">• 적발시 지원금 1개월 지급 기간차감
* 해당 사유로 3회 이상 지급 기간차감 조치시 사업대상자 자격 박탈</td></tr>
<tr><td colspan="2">지원금 지급
의무 및 성실
사용</td><td>• 사업대상자는 지원금을 의무적으로 신청
• 사업목적(Ⅰ-1) 및 사용용도(Ⅲ-1-3)에 따른 사용</td><td colspan="2">• 지원금 미신청시 사업대상자 자격 박탈
• 적발 시점부터 지급을 중단하고, 해당 사용액 환수 및 사업대상자 자격 박탈</td></tr>
<tr><td colspan="2">의무영농
기간준수</td><td>• 지급 기간만큼 추가 영농종사(독립경영) 의무</td><td colspan="2">• 실제 영농에 종사한 기간을 총 영농의무 종사기간(지급기간 + 추가기간)으로 나눠서 그 비율만큼 정착지원금 환수</td></tr>
</table>

*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 수령 시 위 제재사항 외에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의 2에 따라 최대 500%의 제재부가금, 제4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지급 종료 후 의무영농자의 경우 지급 기간차감 사유 발생시 중단 개월수와 동일한 기간만큼 환수** 조치(최종 지급월 기준)

3. 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 2024. 12. 18.(수) ~ 2025. 2. 5.(수) (50일간)

나. 신청방법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서 작성하여 제출(https://uni.agrix.go.kr)

※ 문의 1670-0255(농림사업정보 시스템 콜센터), 064-728-3314(농정과 농정팀)

다. 신청서류

1. (필수)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신청서
2. (필수) 영농(창농) 계획서
3. (필수) 본인세대의 건강보험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또는 지역보험료부과내역(지역가입자) 및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4. (필수)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내역(주민등록번호 포함)
5. (필수) 병역관련 증명서(병적증명서, 복무확인서, 산업기능요원 편입 확인서 등)
6. 사업자 등록사실 증명원(국세청 홈텍스) 및 사업체 폐업예정 서약서, (재직시)퇴직예정 서약서
7. 본인 명의 거래 증명자료(출하 또는 매입증명서, 경영장부 등) 사본
8. 영농활동 중단 증명서류(재학증명서, 병역증명서, 입원확인서 등)
9. 농업법인 대표의 경우 농업법인의 등기부 등본
10. 금융기관 신용조사서
11. 농산업분야 실무 경험이 있는 경우 증명서(재직증명서 등)
12. 농업계 학교(대학원 포함) 졸업한 경우 졸업증명서, 영농창업특성화과정 졸업인증제 수료증, 그 외 최근 3년('22.1.1.~'24.12.31.) 농업교육이수증 사본
13. 수상실적이 있는 경우 상장 사본
14. 농업관련 자격증 및 영농계획 이행에 관련된 농업분야 이외 자격증 사본
15. 그 외에 자격조건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

○ 서면 심사 및 면접 심사 후 개별 통보